

-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추가접수 공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규정 및 2026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추가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31.

인천광역시장

「'26상반기)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추가접수

□ 주요 내용

- 지원규모 : 3,700억원 ※ 지원 규모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방법 : 이차보전 지원(시중은행 협조유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저 2억원 ~ 최대 100억원(기업별 세부 심사 기준에 따름)
-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 대출기간 : 1년, 2년(만기일시상환), 3년(6개월거치 30개월(5회) 분할 상환)

□ 접수 기간 : 2026. 4. 3.(금) 14시 ~ 재원 소진 시까지

2026년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1. 지원 구분 및 개요

구분	지원항목	지원한도	우대지원율	비고
일반기업	제조업 및 제조관련업	10억원	-	
여성·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10억원	0.55%	
	여성친화기업	10억원	0.5%	우대1회
	장애인기업	10억원	0.7%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10억원	0.7%	우대1회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	15억원	0.5%	
	아름다운공장	15억원	0.5%	우대1회
	비전기업	30억원	0.5%	
	중견성장사다리	50억원	0.5%	
	중소기업인대상	50억원	0.5%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10억원	0.5%	우대1회
	소상공인경영대상기업	10억원	0.5%	
	가족친화기업	10억원	0.5%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기업	10억원	0.5%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0억원	0.5%	우대1회
	산업평화대상	15억원	0.5%	우대1회
	지역상품 구매기업	10억원	-	우대1회
	인천미래혁신기업	50억원	-	(기본지원율 고정 2% 지원)
혁신형 기업	벤처기업	10억원	0.5%	우대1회
	스마트공장도입기업	15억원	0.6%	
	지식기반서비스업	15억원	0.5%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10억원	0.5%	우대1회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	10억원	0.5%	
지역 R&D 혁신기업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기업	10억원	0.5%	우대1회
	IR52장영실상 수상기업	10억원	0.5%	
	산업포장, 산업훈장 수상기업	10억원	0.5%	
	국가R&D(연간 5억원/건 이상) 선정기업	10억원	0.5%	
	예비(아기)유니콘, 퍼스트펍권 선정기업	10억원	0.5%	
수출형기업	FTA인증 수출기업	10억원	0.5%	우대1회
	FTA활용 성공사례수상기업	10억원	0.5%	
	수출기업	30억원	0.2%	
고성장기업	I.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30억원	0.5%	
	II.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30억원	0.3%	
고용창출기업	I.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15% 이상	30억원	1.0%	최근월 고용인원 50명 이상 기업 40억원 이내,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기업 50억원이내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우대 1회
	II.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5% 이상	30억원	0.5%	
	III.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30억~55억	0.5%	
	IV. 직전1년간 고용인원 10명 증가	10억	0.5%	
	V.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10억	0.5%	
	VI.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10억원	-	
산업확충기업	해외유턴기업	50~100억원	0.5%	우대1회
	우리시 전입기업	50억원	0.5%	
	신규산단 입주기업	20억원	0.5%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10억원	0.5%	
	6대 전략육성산업	10억원	0.5%	
	재해기업	15억원	0.5%	
사회적친화 기업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0.3억원	0.5%	우대1회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1억원	0.5%	
	창조경제혁신기업	5억원	0.5%	
	관광업	3억원	-	

※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 기부업체 I (지원한도 : 최대 5억원이내), 기부업체II(지원한도 : 최대 10억원 이내)

2. 금회 지원 내용(26년 상반기 이차보전 지원 추가접수)

- 지원규모 : 3,700억원(은행협조용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저 2억원 ~ 최대 100억원(기업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 지원내용 : 운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 ※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니며, 대출가능여부는 사전에 기업이 은행에 직접 확인 요함
 - ※ 운전자금의 포괄적 대환용도 허용 : 기업 정상적 활동에 쓰이는 실질적 운전자금의 경우 대환용도 사용 가능
-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 대출기간 : 1년, 2년(만기일시상환), 3년(6개월거치 30개월(5회) 분할상환)
[단, 함인사: 4년(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수출기업: 6개월 또는 1년 만기일시상환]
- 대출실행 기한 : 2개월 이내(1개월 연장 가능)
- 협약은행 : 총15개 은행
 - ▶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JB전북은행, 산업은행, 광주은행, iM뱅크(대구은행), 경남은행, 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

3. 지원이자율

구 분	내 용					
기본지원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지원기업	용자금리	이자지원율	지원기업	용자금리	이자지원율
		1.01%~1.25%	0.5%		4.01%~4.50%	1.3%
		1.26%~1.50%	0.6%		4.51%~5.00%	1.4%
		1.51%~1.75%	0.7%		5.01%~5.50%	1.5%
		1.76%~2.00%	0.8%		5.51%~5.75%	1.6%
		2.01%~2.50%	0.9%		5.76%~6.00%	1.7%
		2.51%~3.00%	1.0%		6.01%~6.50%	1.8%
		3.01%~3.50%	1.1%		6.51%~7.00%	1.9%
	3.51%~4.00%	1.2%		7.01%~	2.0%	
우대지원	- 0.2% ~ 1.0%					
최종지원	- 기본지원 이자율과 우대지원 이자율을 합산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	최종지원 이자율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4. 3.(금) 14시 ~ 채용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 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자금담당 ☎(032)260-0661~4

5. 심사방법

- 업종, 지원 이력, 중복 제한 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 지원한도 산정
 - 최근 결산 매출액의 1/3과 각 지원 한도 중 적은 금액이 최대한도이며, 기존 상환 중인 대출원금을 제외하여 지원 한도 산정
 - 창업1년 미만(또는 결산기간 미도래) 기업은 재무제표 제출 없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면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가능
 - 과세기간 1년 미만일 경우 결산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가능
 - 법인전환일 경우 개인사업자 매출액을 합산 가능

[사업신청 관련 확인사항]

-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한도가 있는 기업

< 잔여한도 산정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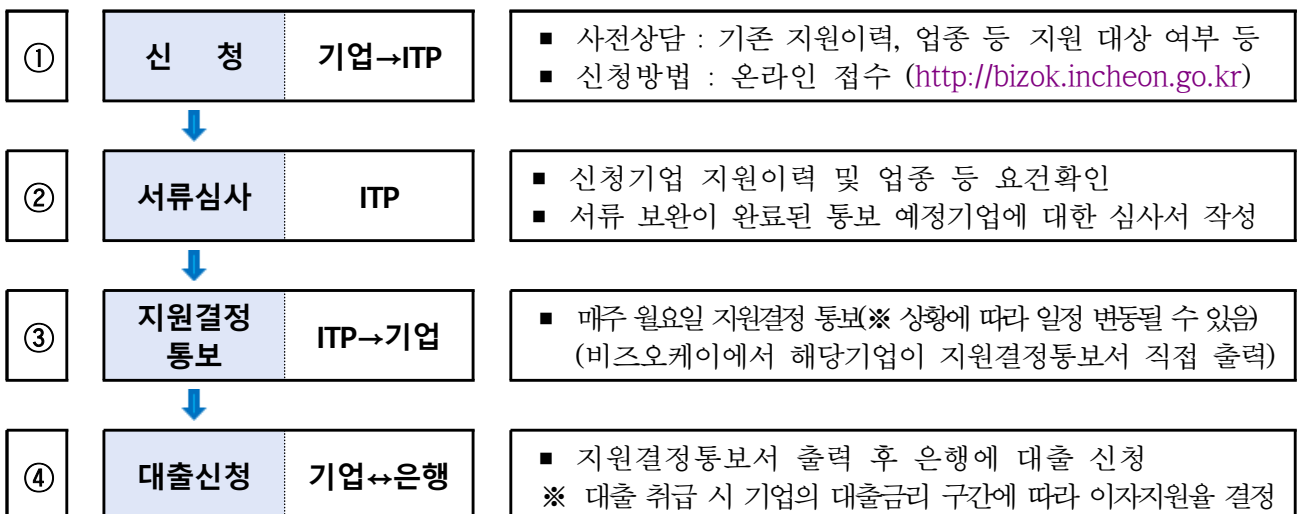
- 잔여한도 = 당해연도 총 지원한도(최근 결산 매출액의 1/3과 항목별 지원한도 중 작은 금액)
 - 수혜중인 인천시 이차보전 지원 대출금액(대출원금 기준)
- 잔여한도가 없는 기업은 기존 이차보전 대출금액 만기일 이후 신청 가능

- 기업 신청·접수 건 중 신청대상 미충족(신청일 기준 잔여한도 없음) 대상 반려

< 예시 >

- (A기업) 기존 이차보전 지원 대출(10억(최대지원한도)) 만기⇒'26.2.10.
 - ① 사업 신청일('26.2.11.), 신청금액 10억⇒**심사 대상**
 - ② 사업 신청일('26.2.5.), 신청금액 10억⇒**반려(만기일 이후 재신청)**
 - (② 만기 이전 중도상환(전액) 했을 경우 증빙(상환영수증 등) 첨부 시 심사 대상 가능)
- ※ 단, 재신청 대기 중이라도 선착순 자원 소진으로 접수 마감 시 신청 불가

6. 지원절차



7. 지원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기업은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인천시 협약대출로 현재 상환중인 대출건수 기준)
 - ※ 동일한 관리번호로 여러건 대출 시 1건으로 간주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 SIMS(통합관리시스템)에서 타기관 운전자금으로 당해연도에 대출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예 : 은행당대출 등)
 - ※ 단, 예외적으로 고성장, 고용창출, 수출형기업, 산업확충,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 기업)은 중복지원 가능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위탁생산기업(OEM) 제외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을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8. 지원결정 취소 등

-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 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기타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9.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은행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인천시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
-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 또는 신용대출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업체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담보 부족 등 은행 여신규정 미충족 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 보증서는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인천신용보증재단 등) 별도 문의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실행 시점 기준으로 적용됨
- 용자 지원 기간 중 휴·폐업하는 경우, 사업장(공장) 소재지가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 중단,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지원결정이 확정된 금액은 대출실행 전이라도 기업별 지원한도에 포함하여 산정(단, 대출취급기한까지 대출 미실행 시 한도 포함 제외)
- 지원결정 확정 이후 타 사업 신청 시, 기존 지원 건 포기신청 후 재신청 가능

- 기업별 지원한도는 금회 지원사업(정기공고)과 별도 시행 중인 ‘금융기관 협업 특별 경영안정자금(연내 시행 예정 포함)’의 한도와 통합 적용(합산관리)되므로, 동일 기업의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중복신청은 제한되며 중복신청 접수 시, 선접수 1건만 유효하며 나머지 신청은 반려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신청기업 대표자)에게 귀속하며, 구비서류 누락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자(기업) 외 대리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하여 신청취소 처리할 수 있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참여 제한 등 제재 및 법적 조치가 행해질 수 있음

1 일반기업

1 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① 제조업 : 제조업(관내 공장등록 必),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요건	매출요건
공장등록 (또는 용도증빙(제조소,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 대장(제조 용도 확인)	전업률 30% 이상 - 손익계산서에서 전체 매출대비 제품매출비율 - 제품매출/전체매출=30%이상

② 제조업관련업 :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번호	업종구분	증빙서류	비고
1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등록증	부분(전문) 정비업제외
2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시내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전세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업체 (택시) 택시운송사업등록증	
3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4	측량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증	
5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6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7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8	무역업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서 ※ 직접 수출실적 70% 이상 충족	
9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확인서 ※ 제물포스마트타운JST입주기업 포함	
10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 지식서비스업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세부업종 [별첨]

※ 10번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은 별첨 참고

2 지원한도

- 기업당 최저 2억원 ~ 최대 1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적은 금액

3 심사방법

- 업종, 지원 이력, 중복 제한 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판단
- 지원 가능 한도 산정
 - 최근 결산 매출액의 1/3과 최대 10억원 중 적은 금액
(단, 2억원까지 매출액 관계없이 기본 한도로 지원함)
 - 기존 대출금액 차감

1단계	2단계	최종
매출액의 3분의1 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기존 대출금액 (대출원금 기준)	지원가능 한도

4 지원이자율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 최저 0.5% ~ 최대 2.0%

지원기업 용자금리	이자지원율	지원기업 용자금리	이자지원율
1.01%~1.25%	0.5%	4.01%~4.50%	1.3%
1.26%~1.50%	0.6%	4.51%~5.00%	1.4%
1.51%~1.75%	0.7%	5.01%~5.50%	1.5%
1.76%~2.00%	0.8%	5.51%~5.75%	1.6%
2.01%~2.50%	0.9%	5.76%~6.00%	1.7%
2.51%~3.00%	1.0%	6.01%~6.50%	1.8%
3.01%~3.50%	1.1%	6.51%~7.00%	1.9%
3.51%~4.00%	1.2%	7.01%~	2.0%

5 구비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서류 및 요건
공 통 (필수)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단,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 발행 재무제표확인원 대체 가능
	업종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제 조 업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지방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2 여성·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여성친화기업, 장애인기업,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①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②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적은 금액

구분	지원항목	최대한도	우대지원율	비고
여성·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10억원	0.55%	
	여성친화기업	10억원	0.5%	우대1회
	장애인기업	10억원	0.7%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10억원	0.7%	우대1회 기부업체 I 지원한도 : 최대 5억원이내 기부업체 II 지원한도 : 최대 10억원 이내

③ 심사방법

- 업종, 지원 이력, 중복 제한 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판단
- 지원 가능 한도 산정
 - 최근 결산 매출액의 1/3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적은 금액
 - 기존 대출금액 차감

1단계	2단계	최종
매출액의 3분의1 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 금액	- 기존 대출금액 (대출원금 기준)	= 지원가능 한도

④ 지원이자율

구분	내용																																				
기본지원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원기업 용자금리</th> <th>이자지원율</th> <th>지원기업 용자금리</th> <th>이자지원율</th> </tr> </thead> <tbody> <tr> <td>1.01%~1.25%</td> <td>0.5%</td> <td>4.01%~4.50%</td> <td>1.3%</td> </tr> <tr> <td>1.26%~1.50%</td> <td>0.6%</td> <td>4.51%~5.00%</td> <td>1.4%</td> </tr> <tr> <td>1.51%~1.75%</td> <td>0.7%</td> <td>5.01%~5.50%</td> <td>1.5%</td> </tr> <tr> <td>1.76%~2.00%</td> <td>0.8%</td> <td>5.51%~5.75%</td> <td>1.6%</td> </tr> <tr> <td>2.01%~2.50%</td> <td>0.9%</td> <td>5.76%~6.00%</td> <td>1.7%</td> </tr> <tr> <td>2.51%~3.00%</td> <td>1.0%</td> <td>6.01%~6.50%</td> <td>1.8%</td> </tr> <tr> <td>3.01%~3.50%</td> <td>1.1%</td> <td>6.51%~7.00%</td> <td>1.9%</td> </tr> <tr> <td>3.51%~4.00%</td> <td>1.2%</td> <td>7.01%~</td> <td>2.0%</td> </tr> </tbody> </table>	지원기업 용자금리	이자지원율	지원기업 용자금리	이자지원율	1.01%~1.25%	0.5%	4.01%~4.50%	1.3%	1.26%~1.50%	0.6%	4.51%~5.00%	1.4%	1.51%~1.75%	0.7%	5.01%~5.50%	1.5%	1.76%~2.00%	0.8%	5.51%~5.75%	1.6%	2.01%~2.50%	0.9%	5.76%~6.00%	1.7%	2.51%~3.00%	1.0%	6.01%~6.50%	1.8%	3.01%~3.50%	1.1%	6.51%~7.00%	1.9%	3.51%~4.00%	1.2%	7.01%~	2.0%
	지원기업 용자금리	이자지원율	지원기업 용자금리	이자지원율																																	
	1.01%~1.25%	0.5%	4.01%~4.50%	1.3%																																	
	1.26%~1.50%	0.6%	4.51%~5.00%	1.4%																																	
	1.51%~1.75%	0.7%	5.01%~5.50%	1.5%																																	
	1.76%~2.00%	0.8%	5.51%~5.75%	1.6%																																	
	2.01%~2.50%	0.9%	5.76%~6.00%	1.7%																																	
	2.51%~3.00%	1.0%	6.01%~6.50%	1.8%																																	
3.01%~3.50%	1.1%	6.51%~7.00%	1.9%																																		
3.51%~4.00%	1.2%	7.01%~	2.0%																																		
우대지원	- 0.2% ~ 1.0%																																				
최종지원	- 기본지원 이자율과 우대지원 이자율을 합산																																				
	<table border="1"> <tr> <td>기본지원 이자율</td> <td>+</td> <td>우대지원 이자율</td> <td>=</td> <td>최종지원 이자율</td> </tr> </table>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	최종지원 이자율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	최종지원 이자율																																	

5 구비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서류 및 요건	
공 통 (필수)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단,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대체 가능	
	업종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제 조 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必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지방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우대 서류 (택1)	여성기업	여성기업인확인서 1부 (중소벤처기업부 위탁수행처 발급)	
	여성친화기업	정부 또는 인천시 여성친화기업 선정서 1부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1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행복 나눔 참여인증서 1부 (인천광역시)	

6 기타 유의사항

- 우대 서류는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일 경우에만 인정됨

3

인천시선정 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가족친화기업, 아름다운공장선정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산업평화대상 수상기업, 지역상품 구매기업, 인천미래혁신기업

1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2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0억원 ~ 5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적은 금액

구분	지원항목	최대한도	우대지원율	비고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	15억원	0.5%	
	아름다운공장	15억원	0.5%	우대1회
	비전기업	30억원	0.5%	
	중견성장사다리	50억원	0.5%	
	중소기업인대상	50억원	0.5%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10억원	0.5%	우대1회
	소상공인경영대상기업	10억원	0.5%	우대1회
	가족친화기업	10억원	0.5%	우대1회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기업	10억원	0.5%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0억원	0.5%	우대1회
	산업평화대상 수상기업	15억원	0.5%	우대1회
	지역상품 구매기업	10억원	-	우대1회
	인천미래혁신기업	50억원	-	우대1회

※ 지역상품 구매기업 및 인천미래혁신기업은 기본지원이자율 2% 고정 지원 (우대지원율은 해당 없음)

3 심사방법

- 업종, 지원 이력, 중복 제한 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 지원 가능 한도 산정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적은 금액
 - 기존 대출금액 차감

1단계	2단계	최종
매출액의 3분의1 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 금액	-	기존 대출금액 (대출원금 기준)
	=	지원가능 한도

4 지원이자율

구분	내용			
기본지원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지원기업 용자금리	이자지원율	지원기업 용자금리	이자지원율
	1.01%~1.25%	0.5%	4.01%~4.50%	1.3%
	1.26%~1.50%	0.6%	4.51%~5.00%	1.4%
	1.51%~1.75%	0.7%	5.01%~5.50%	1.5%
	1.76%~2.00%	0.8%	5.51%~5.75%	1.6%
	2.01%~2.50%	0.9%	5.76%~6.00%	1.7%
	2.51%~3.00%	1.0%	6.01%~6.50%	1.8%
	3.01%~3.50%	1.1%	6.51%~7.00%	1.9%
	3.51%~4.00%	1.2%	7.01%~	2.0%

구 분	내 용
우대지원	- 0.2% ~ 1.0%
최종지원	- 기본지원 이자율과 우대지원 이자율을 합산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0 5px;">기본지원 이자율</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0 5px;">우대지원 이자율</div> = <div style="border: 2px solid blue; padding: 5px; margin: 0 5px;">최종지원 이자율</div> </div>

5 구비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서류 및 요건	
공 통 (필수)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단,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대체 가능	
	업종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제 조 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必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지방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우대 서류 (택1)	유망중소기업	인천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1부	
	비전기업	인천시지정 비전기업 선정서 1부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인천시지정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선정서 1부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인천시지정 중소기업인대상 선정서 1부	
	아름다운공장 선정기업	인천시지정 아름다운공장 선정 통보서 1부	
	품질우수제품지정기업	인천시지정 품질우수제품 지정서 1부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인천시지정 소상공인경영대상 선정서 1부	
	가족친화기업	정부 및 인천시 가족친화기업 선정서 1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기업	인천시지정 일하기좋은 뿌리기업 선정서 1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인재	인천시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서 1부	
	산업평화대상 수상기업	산업평화대상 수상 선정서 1부	
	지역상품 구매기업*	지역상품 매입총괄표 및 관련증빙(세금계산서) 1부	
	인천미래혁신기업	인천미래혁신기업 선정 증빙 1부	

* 지역상품 구매기업 :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속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 당기재료 매입액 대비 올해 연도 ('26.1.1. ~) 지역상품 10% 이상 매입한 기업

6 기타 유의사항

-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 대상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기업은 인증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우대지원
- 아름다운공장 선정기업,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가족친화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인재기업, 산업평화대상 수상기업은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에서 1회 한해 우대지원
- 인천미래혁신기업은 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1회 한해 우대지원

4

혁신형 기업

벤처기업, 스마트공장도입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

①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②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0억원 ~ 15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적은 금액

구분	지원항목	최대한도	우대지원율	비고
혁신형 기업	벤처기업	10억원	0.5%	우대1회
	스마트공장도입기업	15억원	0.6%	우대1회
	지식기반서비스업	15억원	0.5%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10억원	0.5%	우대1회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	10억원	0.5%	우대1회

③ 심사방법

- 업종, 지원 이력, 중복 제한 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판단
- 지원 가능 한도 산정
 - 최근 결산 매출액의 1/3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적은 금액
 - 기존 대출금액 차감

1단계		2단계		최종
매출액의 3분의1 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 금액	-	기존 대출금액 (대출원금 기준)	= 지원가능 한도

④ 지원이자율

구분	내용																																				
기본지원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원기업 용자금리</th> <th>이자지원율</th> <th>지원기업 용자금리</th> <th>이자지원율</th> </tr> </thead> <tbody> <tr> <td>1.01%~1.25%</td> <td>0.5%</td> <td>4.01%~4.50%</td> <td>1.3%</td> </tr> <tr> <td>1.26%~1.50%</td> <td>0.6%</td> <td>4.51%~5.00%</td> <td>1.4%</td> </tr> <tr> <td>1.51%~1.75%</td> <td>0.7%</td> <td>5.01%~5.50%</td> <td>1.5%</td> </tr> <tr> <td>1.76%~2.00%</td> <td>0.8%</td> <td>5.51%~5.75%</td> <td>1.6%</td> </tr> <tr> <td>2.01%~2.50%</td> <td>0.9%</td> <td>5.76%~6.00%</td> <td>1.7%</td> </tr> <tr> <td>2.51%~3.00%</td> <td>1.0%</td> <td>6.01%~6.50%</td> <td>1.8%</td> </tr> <tr> <td>3.01%~3.50%</td> <td>1.1%</td> <td>6.51%~7.00%</td> <td>1.9%</td> </tr> <tr> <td>3.51%~4.00%</td> <td>1.2%</td> <td>7.01%~</td> <td>2.0%</td> </tr> </tbody> </table>	지원기업 용자금리	이자지원율	지원기업 용자금리	이자지원율	1.01%~1.25%	0.5%	4.01%~4.50%	1.3%	1.26%~1.50%	0.6%	4.51%~5.00%	1.4%	1.51%~1.75%	0.7%	5.01%~5.50%	1.5%	1.76%~2.00%	0.8%	5.51%~5.75%	1.6%	2.01%~2.50%	0.9%	5.76%~6.00%	1.7%	2.51%~3.00%	1.0%	6.01%~6.50%	1.8%	3.01%~3.50%	1.1%	6.51%~7.00%	1.9%	3.51%~4.00%	1.2%	7.01%~	2.0%
	지원기업 용자금리	이자지원율	지원기업 용자금리	이자지원율																																	
	1.01%~1.25%	0.5%	4.01%~4.50%	1.3%																																	
	1.26%~1.50%	0.6%	4.51%~5.00%	1.4%																																	
	1.51%~1.75%	0.7%	5.01%~5.50%	1.5%																																	
	1.76%~2.00%	0.8%	5.51%~5.75%	1.6%																																	
	2.01%~2.50%	0.9%	5.76%~6.00%	1.7%																																	
	2.51%~3.00%	1.0%	6.01%~6.50%	1.8%																																	
3.01%~3.50%	1.1%	6.51%~7.00%	1.9%																																		
3.51%~4.00%	1.2%	7.01%~	2.0%																																		
우대지원	- 0.2% ~ 1.0%																																				
최종지원	- 기본지원 이자율과 우대지원 이자율을 합산																																				
	<table border="1"> <tr> <td>기본지원 이자율</td> <td>+</td> <td>우대지원 이자율</td> <td>=</td> <td>최종지원 이자율</td> </tr> </table>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	최종지원 이자율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	최종지원 이자율																																	

5 구비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서류 및 요건	
공 통 (필수)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단,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대체 가능	
	업종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제 조 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必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지방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우대 서류 (택1)	벤처기업	벤처기업확인서 1부	
	스마트공장도입기업	협약서 1부(중소벤처기업부)	
	지식기반서비스업	업종별 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확인서류 1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확인서 1부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 확인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6 기타 유의사항

- 우대 서류는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일 경우에만 인정됨
- 스마트공장도입기업 우대는 스마트공장보급사업 최초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인 기업(중소벤처기업부)

5

지역 R&D 혁신기업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기업, IR52장영실상 수상기업, 산업포장, 산업훈장 수상기업, 국가R&D(연간 5억원/건 이상) 선정기업, 예비유니콘, 야기유니콘, 퍼스트펍권 선정기업

1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2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적은 금액

구분	지원항목	최대한도	우대지원율	비고
지역 R&D 혁신기업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기업	10억원	0.5%	우대1회
	IR52장영실상 수상기업	10억원	0.5%	
	산업포장, 산업훈장 수상기업	10억원	0.5%	
	국가R&D(연간 5억원/건 이상) 선정기업	10억원	0.5%	
	예비유니콘, 야기유니콘, 퍼스트펍권 선정기업	10억원	0.5%	

3 심사방법

- 업종, 지원 이력, 중복 제한 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판단
- 지원 가능 한도 산정
 - 최근 결산 매출액의 1/3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적은 금액
 - 기존 대출금액 차감

1단계	2단계	최종
매출액의 3분의1 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 금액	기존 대출금액 (대출원금 기준)	지원가능 한도

4 지원이자율

구분	내용																																				
기본지원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원기업 용자금리</th> <th>이자지원율</th> <th>지원기업 용자금리</th> <th>이자지원율</th> </tr> </thead> <tbody> <tr> <td>1.01%~1.25%</td> <td>0.5%</td> <td>4.01%~4.50%</td> <td>1.3%</td> </tr> <tr> <td>1.26%~1.50%</td> <td>0.6%</td> <td>4.51%~5.00%</td> <td>1.4%</td> </tr> <tr> <td>1.51%~1.75%</td> <td>0.7%</td> <td>5.01%~5.50%</td> <td>1.5%</td> </tr> <tr> <td>1.76%~2.00%</td> <td>0.8%</td> <td>5.51%~5.75%</td> <td>1.6%</td> </tr> <tr> <td>2.01%~2.50%</td> <td>0.9%</td> <td>5.76%~6.00%</td> <td>1.7%</td> </tr> <tr> <td>2.51%~3.00%</td> <td>1.0%</td> <td>6.01%~6.50%</td> <td>1.8%</td> </tr> <tr> <td>3.01%~3.50%</td> <td>1.1%</td> <td>6.51%~7.00%</td> <td>1.9%</td> </tr> <tr> <td>3.51%~4.00%</td> <td>1.2%</td> <td>7.01%~</td> <td>2.0%</td> </tr> </tbody> </table>	지원기업 용자금리	이자지원율	지원기업 용자금리	이자지원율	1.01%~1.25%	0.5%	4.01%~4.50%	1.3%	1.26%~1.50%	0.6%	4.51%~5.00%	1.4%	1.51%~1.75%	0.7%	5.01%~5.50%	1.5%	1.76%~2.00%	0.8%	5.51%~5.75%	1.6%	2.01%~2.50%	0.9%	5.76%~6.00%	1.7%	2.51%~3.00%	1.0%	6.01%~6.50%	1.8%	3.01%~3.50%	1.1%	6.51%~7.00%	1.9%	3.51%~4.00%	1.2%	7.01%~	2.0%
	지원기업 용자금리	이자지원율	지원기업 용자금리	이자지원율																																	
	1.01%~1.25%	0.5%	4.01%~4.50%	1.3%																																	
	1.26%~1.50%	0.6%	4.51%~5.00%	1.4%																																	
	1.51%~1.75%	0.7%	5.01%~5.50%	1.5%																																	
	1.76%~2.00%	0.8%	5.51%~5.75%	1.6%																																	
	2.01%~2.50%	0.9%	5.76%~6.00%	1.7%																																	
	2.51%~3.00%	1.0%	6.01%~6.50%	1.8%																																	
3.01%~3.50%	1.1%	6.51%~7.00%	1.9%																																		
3.51%~4.00%	1.2%	7.01%~	2.0%																																		
우대지원	- 0.2% ~ 1.0%																																				
최종지원	- 기본지원 이자율과 우대지원 이자율을 합산																																				
	<table border="1"> <tr> <td>기본지원 이자율</td> <td>+</td> <td>우대지원 이자율</td> <td>=</td> <td>최종지원 이자율</td> </tr> </table>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	최종지원 이자율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	최종지원 이자율																																	

5 구비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서류 및 요건	
공 통 (필수)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단,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대체 가능	
	업종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제 조 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必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지방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우대 서류 (택1)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기업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서 1부	
	IR52장영실상 수상기업	IR52장영실상 수상 증빙 자료 각 1부	
	산업포장, 산업훈장 수상기업	산업포장, 산업훈장 수상 증빙자료 각 1부	
	국가R&D(연간 5억원 이상/건) 선정기업	연간 1건당 5억원 이상 선정기업 국가R&D과제 협약서, 선정 공문, 과제비 입금내역 각 1부	
	예비(아기)유니콘, 퍼스트펍권 선정기업	예비(아기)유니콘, 퍼스트펍권 인증서 1부(중소벤처기업부)	

6 기타 유의사항

-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기업은 인증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우대지원
- IR52장영실상 수상기업, 산업포장, 산업훈장 수상기업, 국가R&D(연간 5억원/건 이상) 선정기업, 예비(아기)유니콘, 퍼스트펍권 선정기업은 신청일 기준 수상(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1회 한해 우대지원

6

수출형 기업

FTA인증 수출기업, FTA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수출기업

1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2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0억원~3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적은 금액

구분	지원항목	최대한도	우대지원을	비고
수출형기업	FTA인증 수출기업	10억원	0.5%	우대 1회
	FTA활용 성공사례수상기업	10억원	0.5%	우대 1회
	수출기업	30억원	0.2%	대출기간: 6개월, 1년

※ 단, 수출기업은 우대보전을 0.2%와 별도로 개별은행에서 추가우대 있을 수 있음 (ex)수출입은행 0.3%p 우대)

3 심사방법

- 업종, 지원 이력, 중복 제한 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판단
- 지원 가능 한도 산정
 - 최근 결산 매출액의 1/3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적은 금액
 - 기존 대출금액 차감
- FTA인증 수출기업, FTA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1단계		2단계	최종
매출액의 3분의1 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 금액	기존 대출금액 (대출원금 기준)	지원가능 한도

○ 수출기업(수출실적과 수출계약 중 택일)

구분	심사요건	비고
수출실적 기업	최근 1년간의 직·간접 수출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 - 직수출 : 수출실적증명서 - 간접수출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실적의 1/2과 매출액의 1/3, 30억원 중 가장 적은 금액
수출계약 기업	수령예정인 잔금이 남아있는 수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 - 직수출 : 수출계약서, local L/C(내국 신용장) 등 - 간접수출 : 구매확인서, local L/C(내국 신용장) 등	수출 계약금액 중 수령 예정금의 90%와 매출액의 1/3, 30억원 중 가장 적은 금액

1단계		2단계	최종
매출액의 3분의1과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2분의1 또는 수출계약금액의 90% 중	작은 금액	기존 대출금액 (대출원금 기준)	지원가능 한도

4 지원이자율

구 분	내 용			
기본지원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지원기업 용자금리	이자지원율	지원기업 용자금리	이자지원율
	1.01%~1.25%	0.5%	4.01%~4.50%	1.3%
	1.26%~1.50%	0.6%	4.51%~5.00%	1.4%
	1.51%~1.75%	0.7%	5.01%~5.50%	1.5%
	1.76%~2.00%	0.8%	5.51%~5.75%	1.6%
	2.01%~2.50%	0.9%	5.76%~6.00%	1.7%
	2.51%~3.00%	1.0%	6.01%~6.50%	1.8%
	3.01%~3.50%	1.1%	6.51%~7.00%	1.9%
	3.51%~4.00%	1.2%	7.01%~	2.0%
우대지원	- 0.2% ~ 1.0%			
최종지원	- 기본지원 이자율과 우대지원 이자율을 합산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 최종지원 이자율

5 구비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서류 및 요건
공 통 (필수)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단,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대체 가능
	업종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제 조 업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지방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우대 서류 (택1)	FTA인증 수출기업	업체별(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관세청 발급)
	FTA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 선정서 1부
	수출기업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간접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정보통신) 수출계약서(T/T, L/C, 구매확인서 등)

6 기타사항

- 수출실적과 수출계약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 택1
- 수출실적은 최근 1년간의 직·간접 수출실적 증빙
- 수출계약은 최근 심사시점 수령예정인 잔금이 남아있는 수출계약 증빙
- 수출계약금액 및 수출실적은 심사일 기준 전신환 매입환율(받을 때) 적용
- 수출기업의 대출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원금일시상환)으로 한정

7

고성장기업

①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②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적은 금액

구분	지원항목	최대한도	우대지원율	비고
고성장기업	I.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30억원	0.5%	
	II.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30억원	0.3%	

③ 심사방법

- 업종, 지원 이력, 중복 제한 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판단
- 지원 가능 한도 산정
 - 최근 결산 매출액의 1/3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적은 금액
 - 기존 대출금액 차감

구분	심사요건	계산식
고성장기업 I	-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 개업일자 2023. 01. 02 이전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동등 또는 증가	$3\text{개년 평균증가율} = (A+B) \div 2$ $A = ('25\text{년 매출} - '24\text{년 매출}) \div '24\text{년 매출}$
고성장기업 II	-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 최근결산 매출액 10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 개업일자 2023. 01. 02 이전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동등 또는 증가	$B = ('24\text{년 매출} - '23\text{년 매출}) \div '23\text{년 매출}$

1단계	2단계	최종
매출액의 3분의1 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기존 대출금액 (대출원금 기준)	지원가능 한도

④ 지원이자율

구분	내용			
기본지원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지원기업 융자금리	이자지원율	지원기업 융자금리	이자지원율
	1.01%~1.25%	0.5%	4.01%~4.50%	1.3%
	1.26%~1.50%	0.6%	4.51%~5.00%	1.4%
	1.51%~1.75%	0.7%	5.01%~5.50%	1.5%
	1.76%~2.00%	0.8%	5.51%~5.75%	1.6%
	2.01%~2.50%	0.9%	5.76%~6.00%	1.7%
	2.51%~3.00%	1.0%	6.01%~6.50%	1.8%
	3.01%~3.50%	1.1%	6.51%~7.00%	1.9%
	3.51%~4.00%	1.2%	7.01%~	2.0%

구 분	내 용
우대지원	- 0.2% ~ 1.0%
최종지원	- 기본지원 이자율과 우대지원 이자율을 합산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기본지원 이자율</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우대지원 이자율</div> = <div style="border: 2px solid blue; padding: 2px 5px;">최종지원 이자율</div> </div>

5 구비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서류 및 요건	
공 통 (필수)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재 무 제 표	최근 3개년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ex. 최근 3개년 : 2023, 2024, 2025년) 단,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대체 가능	
	업종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제 조 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必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지방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6 기타사항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일 경우 개인사업자 매출액 합산 가능
 - 1) 개인사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2)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3) 포괄양수도계약서

8

고용창출기업

1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2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0~55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적은 금액

구분	지원항목	최대한도	우대지원율	비고
고용창출 기업	I.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15% 이상	30억원	1.0%	
	II.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5% 이상	30억원	0.5%	
	III.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30~55억원	0.5%	우대1회
	IV. 직전1년간 고용인원 10명 증가	10억원	0.5%	
	V.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10억원	0.5%	우대1회
	VI. 신규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10억원	-	우대1회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은 기본지원이자율 2% 고정 지원 (우대지원율은 해당 없음)

3 심사방법

- 업종, 지원 이력, 중복 제한 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판단
- 지원 가능 한도 산정
 - 최근 결산 매출액의 1/3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적은 금액
 - 기존 대출금액 차감

구분	심사요건	비고
고용창출 기업 I	-3개년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15% 이상	3개년 평균증가율 = (A+B) ÷ 2 A = ('25년 인원 - '24년 인원) ÷ '24년 인원 B = ('24년 인원 - '23년 인원) ÷ '23년 인원
고용창출 기업 II	-3개년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5% 이상 -최근결산 매출액 10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고용창출 기업 III	-시 및 중앙정부 선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유효기간 이내 1회 한하여 우대 적용)	
고용창출 기업 IV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고용인원 10명 이상 증가 ('1년간' 은 12개월 총족 필수, 11개월, 13개월 등은 불가)	■ 고용인원 증가분 = B - A A : 신청일 기준 최근월 대비 1년전 고용인원 수 B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고용인원 수
고용창출 기업 V	-인천시 선정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서 (유효기간 이내 1회 한하여 우대 적용)	
고용창출 기업 VI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기업 기준 가입증서) (유효기간 이내 1회 한하여 우대 적용)	

- 고용창출기업 I 과 II 는 ① 개업일자가 2023. 01. 02 이전이면서 ② 최근 결산년도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동등 또는 증가 해야 하며 ③ 처음 및 마지막 연도 고용인원이 최소 5명 이상 이어야 함
- 고용창출기업 I ~ III에 해당 시 고용 인원수 대비 최대한도 : 최근 월 고용인원 50명 이상 시 40억 원, 100명 이상 시 50억 원
- 단,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은 최대한도 55억원

1단계		2단계	최종
매출액의 3분의1 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 금액	기존 대출금액 (대출원금 기준)	지원가능 한도

4 지원이자율

구분	내용			
기본지원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지원기업 융자금리	이자지원율	지원기업 융자금리	이자지원율
	1.01%~1.25%	0.5%	4.01%~4.50%	1.3%
	1.26%~1.50%	0.6%	4.51%~5.00%	1.4%
	1.51%~1.75%	0.7%	5.01%~5.50%	1.5%
	1.76%~2.00%	0.8%	5.51%~5.75%	1.6%
	2.01%~2.50%	0.9%	5.76%~6.00%	1.7%
	2.51%~3.00%	1.0%	6.01%~6.50%	1.8%
	3.01%~3.50%	1.1%	6.51%~7.00%	1.9%
	3.51%~4.00%	1.2%	7.01%~	2.0%
우대지원	- 0.2% ~ 1.0%			
최종지원	- 기본지원 이자율과 우대지원 이자율을 합산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
				최종지원 이자율

5 구비서류

구분	제출 서류	서류 및 요건	
공통 (필수)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재무제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단,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대체 가능	
	업종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제조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必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지방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우대 서류 (택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고용창출기업 I~II : 최근 3개년도 마지막 월(12월 귀속) 신고서 또는 평균인원 계산시 3개년(매월) 신고서	
	고용우수인증기업	고용창출 III, V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서(인천시) 1부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고용창출기업 IV : 최근월 및 직전 1년전 비교	
	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고용창출기업 VI :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된 가입증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 기타사항

- 고용인원 산출방법
 - 1안) 최근결산 3개년 각각 마지막 월(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인원
 - 2안) 평균인원 계산
 - 월별 신고기업 : 귀속연월 1월~12월 총 12부 간이세액 인원의 평균
 - 반기별 신고기업 : 귀속연월 1월분(상반기), 7월분(하반기) 총 2부 간이세액 인원의 평균
- ※ 월 평균값으로 고용인원 계산 시 평균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 ※ 평균값으로 충족여부 확인 시, 3개년 모두 평균 고용인원을 산출하여 확인
-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인천지역 사업장에 한하여 고용인원 합산
- 법인전환일 경우 법인전환 증빙서류 확인 및 고용인원 합산

9 산업확충기업

해외유턴기업, 우리시 전입기업, 신규산단 입주기업,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6대 전략육성산업, 재해기업

1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2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0억원~10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적은 금액

구분	지원항목	최대한도	우대지원율	비고
산업확충기업	해외유턴기업	50~100억원	0.5%	우대1회
	우리시 전입기업	50억원	0.5%	
	신규산단 입주기업	20억원	0.5%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10억원	0.5%	
	6대 전략육성산업	10억원	0.5%	
	재해기업	15억원	0.5%	

3 심사방법

- 업종, 지원 이력, 중복 제한 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판단
- 지원 가능 한도 산정
 - 최근 결산 매출액의 1/3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적은 금액
 - 기존 대출금액 차감

구분	심사요건
해외유턴기업	1) 완전복귀 : 해외사업장을 2년이상 운영했던 기업이 청산 후 인천내 공장을 설립(사업자등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2) 부분복귀 : 해외사업장을 2년이상 운영중이면서 인천내 공장을 설립(사업자등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해외사업장요건 등은 해외유턴기업 법률 적용 (제조업만 해당되며, 해외사업장 생산품목과 인천공장 생산품목이 일치 등)
우리시 전입기업	우리시로 공장(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기업 ※ 본점 및 공장 이전 필수
신규산단입주(예정)기업	신규산단(강화일반, 서운산단, IHP도시첨단, I-FOOD PARK) 입주예정기업 또는 입주(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기업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 기업
6대 전략육성산업	전략산업확인서 1부 (소정양식) [바이오, 반도체, 로봇, 디지털·데이터, 미래차, 항공]
재해기업	재해(자연재해 또는 인적재난)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업

1단계	2단계	최종
매출액의 3분의1 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기존 대출금액 (대출원금 기준)	지원가능 한도
작은 금액	-	=

4 지원이자율

구분	내용			
기본지원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지원기업 용자금리	이자지원율	지원기업 용자금리	이자지원율
	1.01%~1.25%	0.5%	4.01%~4.50%	1.3%
	1.26%~1.50%	0.6%	4.51%~5.00%	1.4%
	1.51%~1.75%	0.7%	5.01%~5.50%	1.5%
	1.76%~2.00%	0.8%	5.51%~5.75%	1.6%
	2.01%~2.50%	0.9%	5.76%~6.00%	1.7%
	2.51%~3.00%	1.0%	6.01%~6.50%	1.8%
	3.01%~3.50%	1.1%	6.51%~7.00%	1.9%
	3.51%~4.00%	1.2%	7.01%~	2.0%
우대지원	- 0.2% ~ 1.0%			
최종지원	- 기본지원 이자율과 우대지원 이자율을 합산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
				최종지원 이자율

5 구비서류

구분	제출 서류	서류 및 요건	
공통 (필수)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재무제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단,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대체 가능	
	업종증빙서류 (1년 이내 발급본)	제조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지방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우대 서류 (택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이전일자(입주일자) 확인	
	사실증명	개인사업자의 이전일자(입주일자) 확인	
	입주계약(확인)서	입주 또는 입주예정 사실 확인 ※ 산업단지입주기업 중 입주 후 1년 이내 증빙의 경우 입주일자 증빙을 위해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실증명 추가증빙	
	재해피해 증빙서류	재해확인서(구조고도화자금 양식참조), 부대시설 증빙서류, 재해 확인증(화재일 경우 화재증명원)	
	해외사업장 운영 증빙서류	1. 해외진출기업 관련 현지에 등록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는 서류 및 정관(번역문 첨부) 2. 해외사업장 증명서류(기업명 및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설치일, 생산제품종류 등) 3. 해외진출기업의 과거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해외사업장 청산 증빙서류	1. 해외사업장 소재국의 정부가 발급한 청산관련 서류 (청산종결 등기 신고서·접수증, 청산인 신고서·접수증, 폐업 신고서·접수증 등)	
	국내사업장 증빙서류	1. 인천내 운영중인 공장에 대한 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2. 인천내 운영중인 공장에 대한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3. 인천내 운영중인 공장에 대한 기업의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6대 전략육성산업 확인서	소정양식(필요시 전략산업 관련 매출증빙)		

6 기타사항

- 재해기업은 구조고도화자금 심사기준을 준용하며, 매출액의 1/3 한도 규정에서 제외

10 사회적 친화 기업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창조경제혁신기업, 관광업

1 지원대상 : 업종무관

2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0.3~5억원 이내

구분	지원항목	최대한도	우대지원율	비고
사회적친화 기업 (업종무관)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0.3억원	0.5%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1억원	0.5%	
	창조경제혁신기업	5억원	0.5%	우대1회
	관광업	3억원	-	

3 심사방법

- 업종, 지원 이력, 중복 제한 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판단
- 매출액 구분 없이 항목별 최대한도로 추천

구분	심사요건
함께하는인천사람들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로부터 추천 받은 기업
창조경제혁신기업	창업 7년이내 기업으로 인천창조경신센터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기업
인천새일여성인턴 채용기업	1) 인천시 새일센터 인턴쉽을 통해 여성인턴 채용기업 2) 인천시 새일센터 여성인턴지원약정서 체결후 1년 이상 고용유지 기업 3) 상용직 및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관광업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 지정 및 허가를 받은 기업

※ 지원 업종 무관(제조업 및 제조관련업 적용 예외), 재무제표상의 매출 무관

※ 정부자금 중복지원 제한 제외

4 지원이자율

구분	내용																																				
기본지원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원기업 융자금리</th> <th>이자지원율</th> <th>지원기업 융자금리</th> <th>이자지원율</th> </tr> </thead> <tbody> <tr> <td>1.01%~1.25%</td> <td>0.5%</td> <td>4.01%~4.50%</td> <td>1.3%</td> </tr> <tr> <td>1.26%~1.50%</td> <td>0.6%</td> <td>4.51%~5.00%</td> <td>1.4%</td> </tr> <tr> <td>1.51%~1.75%</td> <td>0.7%</td> <td>5.01%~5.50%</td> <td>1.5%</td> </tr> <tr> <td>1.76%~2.00%</td> <td>0.8%</td> <td>5.51%~5.75%</td> <td>1.6%</td> </tr> <tr> <td>2.01%~2.50%</td> <td>0.9%</td> <td>5.76%~6.00%</td> <td>1.7%</td> </tr> <tr> <td>2.51%~3.00%</td> <td>1.0%</td> <td>6.01%~6.50%</td> <td>1.8%</td> </tr> <tr> <td>3.01%~3.50%</td> <td>1.1%</td> <td>6.51%~7.00%</td> <td>1.9%</td> </tr> <tr> <td>3.51%~4.00%</td> <td>1.2%</td> <td>7.01%~</td> <td>2.0%</td> </tr> </tbody> </table>	지원기업 융자금리	이자지원율	지원기업 융자금리	이자지원율	1.01%~1.25%	0.5%	4.01%~4.50%	1.3%	1.26%~1.50%	0.6%	4.51%~5.00%	1.4%	1.51%~1.75%	0.7%	5.01%~5.50%	1.5%	1.76%~2.00%	0.8%	5.51%~5.75%	1.6%	2.01%~2.50%	0.9%	5.76%~6.00%	1.7%	2.51%~3.00%	1.0%	6.01%~6.50%	1.8%	3.01%~3.50%	1.1%	6.51%~7.00%	1.9%	3.51%~4.00%	1.2%	7.01%~	2.0%
	지원기업 융자금리	이자지원율	지원기업 융자금리	이자지원율																																	
	1.01%~1.25%	0.5%	4.01%~4.50%	1.3%																																	
	1.26%~1.50%	0.6%	4.51%~5.00%	1.4%																																	
	1.51%~1.75%	0.7%	5.01%~5.50%	1.5%																																	
	1.76%~2.00%	0.8%	5.51%~5.75%	1.6%																																	
	2.01%~2.50%	0.9%	5.76%~6.00%	1.7%																																	
	2.51%~3.00%	1.0%	6.01%~6.50%	1.8%																																	
3.01%~3.50%	1.1%	6.51%~7.00%	1.9%																																		
3.51%~4.00%	1.2%	7.01%~	2.0%																																		
우대지원	- 0.2% ~ 1.0%																																				
최종지원	- 기본지원 이자율과 우대지원 이자율을 합산																																				
	<table border="1"> <tr> <td>기본지원 이자율</td> <td>+</td> <td>우대지원 이자율</td> <td>=</td> <td>최종지원 이자율</td> </tr> </table>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	최종지원 이자율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	최종지원 이자율																																	

5 구비서류

구 분	세부구분	서류 및 요건
공 통 (필수)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단,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대체 가능
	지방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우대 서류 (택1,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서	발급처 :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창조경제혁신기업 추천서	발급처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발급처 : 인천시 관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광업등록증 또는 유원시설업 신고증	발급처 : 구·군청 등

6 기타 문의처

-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032)873-3800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032)458-5061
- 인천시 여성복지관 ☎(032)440-6516

【별첨자료】 「1」일반기업 - 제조업 관련업 관련(7페이지)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범위>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산업명	표준산업분류번호
도로화물 운송업	493
해상 운송업	501
항공 운송업	51
화물 취급업	5294
보관 및 창고업	5210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13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2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52993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오라키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76390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74212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포함)	(39009)
폐기물 처리업	382
폐수 처리업	37012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산업명	표준산업분류번호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6312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6399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1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0112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3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1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9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70201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209
시장 조사업(여론 조사업 제외)	71400
경영 컨설팅업	7153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39001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09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제품 디자인업	73202
시각 디자인업	73203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3209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1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19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1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4

지식서비스업

산업명	표준산업분류번호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2
포장 및 충전업	75994

※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영위여부 확인

- 1)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설명에 따라 관련 등록증 및 허가증 등을 통해 업종영위 여부 확인필수
- 통계청>통계분류포털>한국표준산업분류>분류코드 검색
 - ※ 세부업종에 따라 복수이상의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이 구비되어야 하는 산업도 있음
ex.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시설경비허가증, 위생관리용역업신고증,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등 중 2개이상 구비필수)
- 2) 등록증 및 허가증이 구비되지 않는 제조관련서비스업의 업종일 경우 관련매출의 확인을 통해 업종영위 여부 판단
- 해당 업종영위 관련 계약서류 확인
 - 관련 매출액 확인 (세금계산서 확인)
 -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관련매출)가 전체매출의 20% 이상 충족하여야 함
ex. 포장 및 충전업 등